

○○○씨장학회 회칙

제 1 조 : 명 칭

본회는 ○○○씨 장학회라 칭한다.

제 2 조 : 목 적

본회는 ○○부원군 후손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타의 모범인 학생으로서 경제적 곤란으로 학업지속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 보조함으로써 ○○○씨 후손의 명예와 긍지를 드높이고 대중회 발전과 종친의 화목단결을 도모하는데 있다.

제 3 조 : 선 발

본회의 장학생 선발은 각 지부장의 추천을 받아 본회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심의 선발한다.

제 4 조 : 회 원

본회의 회원은 ○○ 부원군 후손으로 한다.

제 5 조 : 임 원

본회의 임원은 ○○○씨 대중회 운영임원(이하 임원이라 칭함)이 겸임한다.

제 6 조 : 임 기 및 임 무

본회의 임원의 임기 및 임무는 ○○○씨 대중회 임기, 임무와 같다.

제 7 조 : 목 표 액

본회의 기금 목표액은 5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장학금 모금은 종친으로 하되 1구좌당 1,000원으로 하고 본인의 성의 여하에 따라 몇 구좌든지 기금을 낼 수 있다.

100구좌(10만원)이상의 기금을 내주시는 분의 존함은 금석에 새기어 길이길이 후손에게 전한다. 단, 모금 마감일은 90년 2월 28일로 하고 납입방법은 일시납 또는 분납도 가능 하다.

제 8 조 : 재 정

본회의 재정은 장학금, 특별찬조금 등의 수입으로 하고 장학기금은 시중 금융지관에 저금 하며 그 수입금으로 사업비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9 조 : 회 계 연 도

본회의 회계연도는 ○○○씨 대중회 회계연도와 같다.

제 10 조 : 운 영 세 칙

본회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은 임원회에서 정하여 실시하다.

제 11 조 : 시 행

본 회칙은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【부 칙】

제 1 조

제 1 회 장학금은 1989년 3월 1일 총회 결의에 의거 89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생으로 하고 기금이 마련될 때까지는 ○○○씨 대중회 기금에서 차입하여 지급한다.

제 2 조

제 2 회 장학금은 1989년 3월 1일 총회 결의에 의거 90학년도 서울대학교 신입생으로 하고, 기금이 마련될 때까지는 ○○○씨 대중회 기금에서 차입하여 지급한다.

【특지장학회 운영규정】

제 1 조(목적)

이 규정은 ○○특지장학회(이하 「특지장학회」라 칭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운영원칙)

- ① 특지장학금은 1구좌 5천만원(또는 이에 해당하는 환가가능 유가증권, 부동산)을 기본금으로 하여 기탁자 ○○을 대리하여 ○○○씨 장학회에서 수납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모든 내용을 기탁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운영한다.
- ② 특지장학기금은 기금 출연자 별로 기탁한 대중회 회관건물 매입기금과 장학기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
- ③ 기금 출연자 명의의 특지장학회는 기금 출연자의 신청을 받아 대중회의 승인을 득 하고 설립한다.

제 3 조(지급원칙)

특지장학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른다.

- ① 특지장학금의 지급은 설립년도 다음해부터 매년 수입이자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원금의 보존 및 특지장학금의 규모를 늘려나가기 위하여 실세금리 상태에서의 수입이자 80% 내외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4 조(수혜자격)

특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- ① ○○○씨대중회 회원 자녀 중品行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대학 입학한 학생으로 기탁자의 추천을 받은 자
- ② ○○○씨 장학회의 추천을 받은 자

제 5 조(수혜자 선발)

제4조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○○○씨 장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한다.

제 6 조(지급방법)

기탁자의 입회하에 증서와 장학금을 지급한다.

제 7 조(상환)

특지장학금은 ○○○씨 장학회에 귀속하고 장학금은 전액 무상으로 하며 상환의무는 없다. 단 수혜자는 장학금 지급 취지에 맞추어 자기의 할 일에 최선을 다 할 의무를 진다.

제 8 조(권리상속)

출연자의 사망 등 유고시에는 특지장학회의 모든 권리(운영협의, 선발, 지급 등)가 출연자가 지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귀속되어 영구히 지속한다.

제 9 조(기타사항)

본 규정 이외의 제반사항은 기탁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○○○씨 장학회에서 처리하며 특지장학금 운영에 대한 사항을 연1회 기탁자에게 보고한다.

제 10 조(부칙)

- ① 이 규정은 2001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이 규정은 2002년 1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